

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을 위한 자금의 보조·용자

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9.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인수한 부산교통공단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 다만,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를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제외한다.

제8조제3항중 “도시철도계정”을 “대중교통계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2항제9호 및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전의 도시철도계정을 대중교통계정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도시철도 외에 버스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의 육성·지원을 위

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항만계정의 세입에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토석·모래 등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를 위한 점용료·사용료를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의한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7월13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건설교통부 추병직
장 관

◎法律 第7600號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동조제13호중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대수선 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로 한다.

제16조제5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6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9항(중전의 제8항)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당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을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당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제1항 본문중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의 허가를 한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에 한한다)을 허가할 수 없다.

제56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미성년자·금치산자”를 “금치산자”로 한다.

제93조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16조제8항”을 “제16조제9항”으로 한다.

제97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16조제7항”을 “제16조제8항”

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전단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의2나목중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며, 동호다목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호라목중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동조제5호나목중 “대한주택공사법”을 “「대한주택공사법」”으로, “한국토지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하고, 동조제6호나목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며, 동조제12호라목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으로 하고, 제5조제2항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며, 제5조의3제4항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제6조제1항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제7조제3항중 “국토기본법”을 “「국토기본법」”으로,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며, 제9조제1항제4호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1조제3호 및 제4호중 “부정수표단속법”을 각각 “「부정수표단속법」”으로 하며, 제12조제1항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건

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며, 제13조제1항제6호가목 내지 라목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하고, 제16조제2항제1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7조제1항제1호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매립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광업법”을 “「광업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6호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며, 동항제9호중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사도법”을 “「사도법」”으로 하며, 동항제11호중 “사방사업법”을 “「사방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12호 본문중 “산지관리법”을 “「산지관리법」”으로, “산림법”을 “「산림법」”으로 하며,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법」”으로 하고, 동항제13호중 “소하천정비법”을 “「소하천정비법」”으로 하며, 동항제14호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하고, 동항제15호중 “연안관리법”을 “「연안

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16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17호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하며, 동항제18호중 “장사등에관한법률”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19호중 “지하수법”을 “「지하수법」”으로 하며, 동항제20호중 “초지법”을 “「초지법」”으로 하고, 동항제21호중 “측량법”을 “「측량법」”으로 하며, 동항제22호중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고, 동항제23호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하며, 동항제24호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하고, 제18조제3항 전단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8조의2제3항 전단중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9조제3항 및 제4항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각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0조제1항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으로 하며, 제21조의2제3항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표창규정」”으로 하고, 제24조제2항제3호중 “건설기술관리

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하며, 제24조의2제1항중 “전력기술관리법”을 “「전력기술관리법」”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하고, 제26조제2항중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7조의 제목, 동조제1항,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각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0조제1항 전단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5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하고, 제37조제2항중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하며, 제3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제41조의2제3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제42조제4항 및 제46조제1항중 “건축법”을 각각 “「건축법」”으로 하며, 제46조제2항 본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각

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53조제4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제60조제2항제2호중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의2중 “복권및복권기금법”을 “「복권 및 복권기금법」”으로 하고, 제61조제1항제1호중 “국민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대한주택공사법”을 “「대한주택공사법」”으로, “한국토지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하고, 제62조제7항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하며, 제63조제1항제7호중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으로 하고, 동항제12호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하며, 동항제13호중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을 “「주택저당채권 유통화회사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하고, 동항제16호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며, 제67조제3항중 “국채법”을 “「국채법」”으로 하고, 제68조제1항제2호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며, 제72조의 제목 및 동조 본문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고, 제80조제1항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을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며, 제80조의2제1항 전단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 및 제4항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각각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제83조의 제목 및 본문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하고, 제84조제1항제3호중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며, 제101조제4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하고, 제102조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3호, 제24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사업계획의 승인 및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 제23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③(리모델링 감리 및 행위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3호, 제24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개정이유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축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상주감리를 의무화하고,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재건축 결정을 받은 공동주택은 증축을 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증축을 포함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일정 범위내에서만 허용하고, 주택건설 사업주체의 간선시설 설치부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 사업주체의 간선시설 설치부담 범위를 명확히 설정 (법 제16조제5항 및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에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나, 사업주체가 자발적으로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에 포함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의무가 있는 간선시설도 사업주체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상주감리 의무화(법 제24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이 리모델링의 허가를 한 때에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한 때와 마찬가지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을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함.

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증축범위의 제한 및 안전기준 강화(법 제2조제13호, 법 제42조제2항 단서 신설)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운데 증축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그 범위를 제한하도록 하고, 안전진단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증축을 하는 리모델링은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7월13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건설교통부 추병직
장관

◎法律 第7601號